재정운영에관한규정 4-4-11

규정번호 4-4-11
제정일자 2018.2.5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5차 개정
관리부서 예산감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건전하고 합리적인 학교 회계 예산운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각종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위원회의 설치) 우리대학의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호 삭제 2019.02.25.)
4.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호 삭제 2019.02.25.)
6.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예산감사팀장, 총무회계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27., 2018.12.10)

③ 임명직위원은 총장이 학생 대표, 동문 대표, 학부모 대표 및 각 학부에서 추천하는 교원 5인(학부별 1명)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교직원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06.17.)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임기) 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대표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7.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 사무처장, 예산감사팀장, 총무회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8.27)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관련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등록금의 중장기 사용계획
6.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당해 연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④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제10조(기타) 대학 재정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